

『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2월 20일

제15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이 홍 희

나. 제안이유

- 기업의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투자환경이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등을 개정하여 기업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전체 정비
- 용어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구체화(안 제2조)
 - “투자유치”, “본사”, “공장”, “연구소”, “사업개시일”의 정의

-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조건을 구체화
(안 제12조제2항, 안 제13조제2항, 안 제19조제1항, 안 제20조제1항)
 - “신규 고용” 인원에서 “신규 채용 상시 고용” 으로 구체화
- 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기준을 외국인 투자 기업과 일치(안 제19조제2항, 안제20조제2항)
- 기업이전투자 시 지원기준을 신규투자지원 기준과 일치(안 제22조제3항)
 - 투자금액의 20%의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
- 관내 기존기업의 증액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급 조항 신설
 - 관내 3년 이상 제조업 영위기업 300억원 이상 투자 시 지원
(안 제23조의1제1항)
 - 투자금액의 20%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
(안 제23조의1제2항)
-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에게도 보조금 지원 조항 신설(안 제26조제2항)
-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유도를 위해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특별지원 조항 신설(안 제26조제3항)
- 지원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명시
 - 지원대상 사업을 3년 이내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로 기한 명시(안 제30조제1항제3호)
 -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 사업 착수하지 않은 때로 기한 연장(안 제30조제1항제4호)
- 투자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조항 신설(안 제30조의2제2항)

라. 참고사항

- 「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 및 시행규칙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6조
- 「기술개발촉진법」 제7조 ○ 「소득세법」 제168조
-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조 ○ 「건축법」 제22조
-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19조 및 시행령 제17조
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교 역

- 기업의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투자환경이 급속히 변화되면서 지자체 간의 유치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, 이러한 경쟁 속에서 우리 시가 투자유치에 우위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용어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구체화 하였으며
-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을 “신규고용” 인원에서 “신규채용 상시고용” 으로 구체화 하였고
- 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일치되게 상향조정하였으며
- 기업 이전 보조금을 신규투자 지원금과 일치토록 하여 타 지자체 기업이전을 유도하고

- 관내 기존기업의 증액투자에 따른 보조금지급 조항 및 대규모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하였음
- 또한, 지원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명시하였으며,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기업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